

행정기획위원회  
소관

#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북구  
(문화체육과)

#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 안 번 호	518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사업 :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5. 12. ~ 2026. 2. (위탁계약 체결일부터)
- 운영기간 : 2025. 12. 20.(토) ~ 2026. 2. 1.(일)(우이천다목적광장)  
2025. 12. 27.(토) ~ 2026. 1. 25.(일)(길음7단지 유~~휴~~부지)
- 위탁내용
  - 눈썰매장, 얼음썰매장, 아이스링크, 체험학습장, 어린이 놀이기구, 휴게시설,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, 폐장 후 철거
  -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, 인력 운용 등
  -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 -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- 위탁비용 : 1,070,000천원
- 수탁 참가 자격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
  - 최근 5년 이내 실외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 및 운영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(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)이 있는 사업자
- 위탁업체 선정 :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

#### 나. 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 유도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
-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○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### 제4조의3(민간위탁 동의안)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#### 나. 예산조치

-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: 총사업비 1,102,000천원
  - 민간위탁금 : 1,070,000천원
  - 사무관리비 : 20,000천원
  - 행사운영비 : 12,000천원